

한국가스안전공사 법률고문 위촉 공개모집 공고

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가스안전기술의 개발 및 가스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수행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법률고문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

2023년 12월 7일

한국가스안전공사

1 위촉인원 및 위촉조건

- 위촉인원 : ○명
- 위촉기간 : 2024. 1. 1.부터 2024. 12. 31.까지
- 직무내용
 -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,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, 「도시가스사업법」, 「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가스 관련 법령 해석 및 적용 등 검토
 - 공사 운영 관련 법적 사안 자문
 - 계약서 등 주요 서류 검토·작성 등 지원
 - 기타 공사가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
- 보수(자문료) : 월정 130만 원(부가가치세 포함)

2 지원 자격

- 자격요건
 - 「변호사법」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
 - 「변호사법」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(유한)
 - 「변호사법」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
 - 「대한변호사협회 회칙」 제39조에 따라 신고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와 공동법률사무소
 - 「정부법무공단법」에 따른 정부법무공단

※ 공사 자문에 응할 변호사 2인 이상의 자문 팀 구성 및 팀장급 변호사의 법조 경력 5년 이상

□ **결격사유(자문팀 변호사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)**

- 공고일 기준 수임비리, 금품·향응제공, 청탁 등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거나 「변호사법」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
- 공고일 현재 공사가 당사자인 사건의 상대방 소송대리인 등 이해충돌 사항이 있는 경우
- 청렴서약서 및 정보공개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
3 서류 접수

□ 접수기간 : 2023. 12. 7.(목) ~ 2023. 12. 14.(목) 24:00

□ 접수방법 : 이메일(e-mail) 접수만 가능(aoing@kgs.or.kr)

※ **이메일 제목에 반드시 “[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명] 법률고문 지원서” 기재**

※ 방문접수, 우편접수 불가

□ 접수 및 문의처 : 한국가스안전공사 법무지원부 정아영 과장(연락: 043-750-1208)

□ 지원서 서식 : 붙임서식 참조

□ **제출서류**

가. 법률고문 공모지원서

나. 자문팀 구성계획서

다. 변호사 자격등록증명원(대한변호사협회)

라.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(대한변호사협회)

※ **제출서류는 총 2개의 PDF 파일로 제출(가.~나. 합본 1부, 다.~라. 합본 1부)**

※ 제출서류는 **자문 팀 변호사 전부를 기준으로 하며,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.**

※ 서류 합격자에 한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

4 심사 및 대상자 선정

□ **심사방법**

- 서류심사만 실시(면접심사 없음)
- 제출서류를 기초로 자격요건 충족 여부, 적합성 등 평가
 - ※ 평가항목 : 일반현황, 수행능력, 공사업무 이해도 등 평가

□ 최종대상자 선정 및 발표(개별 통지) : 2023. 12. 22.(금) 예정